

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21-10 (3호)
안건유형	심의

---

미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

---

2021. 6. 9.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I . 추진배경 .....	1
II . 현황 및 한계 .....	5
III . 정책방향 .....	7
IV . 추진과제	
1. 대학원생 ICL 제도 도입 .....	9
2. 대출 자격요건 완화 .....	12
3. 취약계층 재학 중 이자 면제 및 파산자 면책 허용 .....	13
4. 장기미상환자 제도 개선 .....	15
V . 향후 추진계획 .....	16

## I. 추진배경

- 코로나19 발생과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들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
    - 청년 채무 발생의 주된 사유\*가 학자금 마련으로, 학자금대출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 ※ 청년실업률(%) : (16)9.8 →(17)9.8 →(18)9.5 →(19)8.9 →(20)9.0 →(21.2)10.1
      - ※ 청년 채무발생 사유(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거비 마련(42.9%), 학자금 마련(34.1%), 생활비 마련(12.0%), 창업자금 마련(7.5%), 기타(3.4%)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 지원 필요
      - ※ 최근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학자금대출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 연장 행정명령 조치 시행, 1인당 1만달러(약 1,120만 원) 학자금대출 채무 탕감 방안도 검토 중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미래 상환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문제 해결에 기여
    - 다만,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요구 지속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적자원 감소로, 한정된 인재의 보다 효과적인 육성이 인적자원 개발의 매우 중요한 요소
    - 급격한 기술진보에 따른 숙련노동자의 수요 증가로 대학원 교육의 중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고등교육 등록금에 대한 관심 대상도 확장 필요
      - ※ '19~'28년 과학기술인력 수급조사 결과, 석·박사급 약1만명 부족 전망(KISTEP, '19)
    - 주요국\*에서도 국가발전에 필요한 석·박사급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 중
      - \* 현재 대학원생 ICL 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 등에서 시행 중
- ◇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제도의 역할에 한정하지 않고, 미래에 필요한 전문고급 인력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 제도로의 보완·변화 필요

## < 추진경과 >

- '10. 1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 도입 시행
  - '10년 1학년부터 학자금 대출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의무화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여 '13년도에 4학년까지 전면 적용
- '12. 1월 : 재학생 성적기준 완화(B학점 → C학점)
- '12. 1월 : 군복무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시행
- '13. 7월 :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연간 200만 원 → 300만 원)
- '14. 7월~'15. 5월 :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 \* 고금리(5.8%~7.8%) 정부보증학자금 대출('05.2학기~'09.1학기)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09.2학기)을 2.9%로 전환
- '15. 1월 : 대출자격을 학자금지원 8구간까지 확대
- '16. 7월 :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에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선택 가능하도록 허용(대출 선택권 확대)
- '17. 1월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35세 → 45세)
- '17. 5월 : 대통령 공약사항 및 신정부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
  - \*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49-4-2)
- '18. 2월 : 장애인 성적기준 완화(C학점 → 폐지)
- '18. 7월 : ICL 생활비 대출 무이자율 3구간 → 4구간 이하까지 확대
- '20. 4월~'21. 3월 : 2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1차와 기준 동일)
- '21. 1월 : 소득(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ICL 의무적용
- '21. 5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 주요내용 : ICL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성적·신용요건 폐지, 취약 계층 이자면제, 파산면책 허용

# 참고1

# 해외 사례

구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개요	취업후상환 도입시기	2009				1990			1989		1992	
	취업후상환 근거법률	대학 비용절감 및 기회확대법				교육법 (Student Loans)			고등교육지원법		학자금대출법	
	관리기관	연방교육부(FSA)				학자금관리공사(SLC)			정부, 고등교육기관, 국세청		교육부, 국세청, 사회개발부	
대출자격 및 조건	대출자격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및 학부모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생, 대학원생		대학생, 대학원생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학부 및 대학원생)	
	연령자격	없음				없음 ※ 생활비는 '16.8.1.기준 60세 미만			없음		없음 (생활비는 55세 미만)	
	대출종류	플러스론	다이렉트론(DL)		퍼킨스론 (대출 중단)	Plan 1 (대출 중단)	Plan 2	대학원생 대출	HELP	VSL	Student Loan	
			(비보조)	(보조)		'12.8.31. 까지 학부생 (전일제)	'12.9.1. 부터 학부생 (시간제/ 전일제)	'16.8.1. 부터 석사, '18.8.1. 부터 박사	HECS, FEE, OS, SA	FEE		
	대출금리	5.3%	4.5% (대학원 생) 2.75% (학부생)	2.75%	5% (고정)	1.1%	2.6% ~ 5.6%	5.6%	1.8% ('20. 7. 1. ~ '21. 6. 30.) ※ '20년 3월 CPI 적용 ※ 7.1. 기준으로 한 번 적용		거주자	해외 체류자
		'20. 7. 1. ~ '21. 6. 30. ※ 코로나-19 응급상황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부 대출 이자율 0% 적용('20.3.13~12.30.)				'20. 9. 1. ~ '21. 8. 31. ※ '20년 3월 기준 RPI 적용					무이자	3.5%
대출금액	수업료, 생활비 (학년, 독립 여부 등에 따라 대출 상한액 차등)				수업료, 생활비 (대학 과정, 지역별 대출 상한액 차등)			의치대 등: 152,700 AUD, 일반: 106,319 AUD		수업료, 수업 관련 비용(상한)		
상환방법	상환방식	일반상환방식(표준/가속/연장) /취업후상환방식(소득연계형)				취업후상환			취업후상환		취업후상환	
	회수주체	조세체계와 미연계				국세청 (HMRC)			국세청 (ATO)		국세청 (Inland Revenue)	
	회수 시점	재량소득 이상 소득 발생 시 * 빈곤선 (poverty guideline)의 150% ↑ ※ 취업후상환방식(소득연계형)				기준소득 이상 소득 발생 시 ['19.4.6.~20.4.5.(회계연도 2019-20)]			기준소득 이상 소득 발생 시 AUD 46,620 ('20. 7. 1. ~ '21. 6. 30.) 기준)		기준소득 이상 소득 발생 시 NZD 20,020 ('20. 4. 1. ~ '21. 3. 31 기준)	
		취업후상환방식 (소득연계형)				기준소득 초과분의 9%	기준소득 초과분의 9%	기준소득 초과분의 6%	소득수준에 따라 의무상환율을 소득액에 차등 적용(1~10%) ('20.7.1.~'21.6.30. 기준)		기준소득 초과분의 12%	
상환 방식	RE- PAYE	PAYE	IBR	ICR	ISR	Plan 1 또는 2 + 대학원생 대출 동시 대출 시						
	10% (일반), 20년	10% (일반), 20년	15% 이하, 25년	20% 이하, 25년	4~ 25% 15년	£21,000 이상: 6%, £26,568 이상: 9% 초과분 상환						

## 참고2

##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 현황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li> </ul>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li> </ul>
	성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입생 : 제한 없음</li> <li>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li> <li>※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입생 : 제한 없음</li> <li>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li> <li>※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li> </ul>
	소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li> <li>※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li> <li>※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li> <li>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li> </ul>
신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파산자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파산자 등 대출 제한</li> </ul>	
대출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동금리(연 1.70%, '21년 1학기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정금리(연 1.70%, '21년 1학기 기준)</li> </ul>	
대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li> <li>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li> <li>※ 대출금액 총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li> <li>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li> <li>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li> </ul> </li> <li>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li> </ul>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졸업 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li> <li>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li> </ul>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li> <li>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li> <li>※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li> </ul>	
대출규모	('20년) 학부생 24만명 8,215억원 (~20년 누계) 학부생 153.6만명 128,781억원	('20년) 학부생 10.8만명 4,129억원 대학원생 6.4만명 4,810억원 <b>총 17.2만명 8,940억원</b> (~20년 누계) 학부생 118.5만명 74,674억원 대학원생 31.7만명 47,457억원 <b>총 144.5만명 122,130억원</b>	

## II. 현황 및 한계

### 1 학자금 지원 현황

- 정부는 지원 대상, 기준 및 운영 방식 등을 구분하여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사업으로 학자금 지원

< 정부의 학자금 지원 체계 (교육부 주관, '21년 기준) >

지원유형	지원제도		소득기준	지원대상
장학금	국가장학금	I 유형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
		II 유형	대학별 자체 기준	
		다자녀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지역인재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근로장학금	교내·교외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소득기준 없음	
	우수장학금	인문100년/예술체육 비전/전문기술인재	소득기준 없음 (저소득층에 가점)	대학생
		드림장학금	기초·차상위	고 2·3학년
희망사다리 장학금	I 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 II 유형(고졸후학습자)	소득기준 없음	대학생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 (4구간 이하 대학생은 의무적용)	대학생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소득기준 없음	대학생, 대학원생

- **(국가장학금)** '20년 전체 대학 재학생 215만 명의 48.2% 수준인 104만 명의 대학생에게 총 3조 4,405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
- **(학자금 대출)** '20년 대학(원)생 62만 명에게 총 1.7조원의 학자금 대출을 지원(취업 후 상환 0.8조 원, 일반 상환 0.9조 원)

(단위 : 억 원, 명)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취업 후	금액	11,983	9,046	8,379	8,777	8,215
	인원	470,375	379,450	359,866	382,886	361,802
일반	금액	7,145	8,391	9,698	9,555	9,463
	인원	186,464	237,413	267,965	263,802	256,074
합계	금액	19,128	17,437	18,077	18,332	17,678
	인원	656,839	616,863	627,831	646,688	617,876

## 2

## 현행 제도의 한계

◇ 국가장학금의 지속적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학자금 지원 정책이 고등교육 기회 균등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 학자금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부족, 수요자의 낮은 체감도 등에 대한 한계는 여전

① **(학부생 중심의 지원)** 현재 국가장학금 등 대부분의 학자금 지원 대상이 학부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학원생의 등록금 지원은 미흡

- 대학원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등록금으로 학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더 큰 상황이나 지원 체계는 부족

※ '20년 등록금 평균 : (학부) 연간 673만 원 / (대학원) 연간 883만 원

- 등록금에서 실제 학자금 대출 등으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 ('19년 기준, 530만 원)은 학부생(289만 원)에 비해 약 1.8배 이상

- 특히, 전일제 석·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수업의 연구·논문 작성 등으로, 학비 조달을 위한 경제활동은 어려움

② **(사각지대 존재)** 경제적 사유로 학업수행 시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성적요건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 외 학자금 대출까지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성적·이수학점 미달로 '20년 약 1.3만명의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으며, 학자금 대출 거절 사유 중 50% 이상이 성적·이수학점 미달

※ 성적기준 : (국가장학금) B학점 이상, (학자금 대출) C학점 이상

※ 학자금 대출 거절자 중 성적·이수학점 미달자(비율) : ('18) 22,284명(68%) → ('19) 12,850명(55%) → ('20) 13,877명(56%)

③ **(수요자의 낮은 체감도)** 취약계층 대상 국가장학금이 지속 확대되었으나, 실제 등록금 충당에는 부족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는 한계

※ 저소득층 및 다자녀 대상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액('21년)이 520만 원으로 '20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749만 원의 70% 수준

- (저소득층·다자녀) 등록금 추가 마련 수단인 학자금 대출 시 소득 구간에 따른 이자 지원은 부족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부담은 가중

- (청년 파산자) 파산 시 ICL 대출금 상환 책임은 면책되지 않아,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이중고 발생



### Ⅲ. 정책 방향

		현재(As-is)	개선(To-be)	수혜인원
지원 대상		▶ 학부생	▶ 학부생 ▶ <b>대학원생*</b> * '22년에는 일반대학원생 우선 적용	7,040명 * 8구간 이하 전체 대학원생 지원 시 24,633명
대출신청자격요건	성적기준	▶ (성적) 직전학기 C 학점(70/100학점) 이상 ▶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성적) <b>제한없음(폐지)</b> ▶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이수학점 기준 미달 학생 대상 구제제도 운영 * 신입생, 장애인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22,285명 * '21. 2학기 특별승인제도 확대에 따른 수혜인원 8,838명 포함
	소득기준	▶ (학부생) 8구간 이하 * 다자녀가구의 학부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학부생) 8구간 이하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생) <b>4구간 이하(22년 기준)</b>	(7,040명)
	신용요건	▶ 제한없음 *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b>제한없음(폐지)</b> *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이자면제 대상(기간)	▶ 군 복무자(군복무기간) ※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생활비 무이자 대출	▶ 군 복무자(군복무기간) ▶ <b>기초·차상위계층(재학기간)</b> ▶ <b>다자녀가구(재학기간)</b> ※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생활비 무이자 대출	57,198명	
파산 시	▶ 대출 상환 지속	▶ <b>상환의무 면책</b>	2,186명	
				(합계) 약 88,709명

#### ①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 지원을 위한 여건 마련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학생이 석·박사 과정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 누구에게나 대학원을 진학하고 공부토록 지원하여 교육기회 균등 제공을 통한 사회 이동성 촉진

②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성적 등 자격 요건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개선하여 학자금 대출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학자금 대출제도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강화하여 대학(원)생의 학업지속성 제고 및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

③ 실질적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지원 체계 개선

-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의 보완적인 역할로 학자금 대출의 이자면제를 확대하여 학자금 지원의 효율성 및 체감도 제고
- 취업난 지속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수행

④ 지속가능한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정 건전성 제고

- 학자금 대출의 결손 발생 시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므로,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관리로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
- 채권 발행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는 학자금 대출의 특성 상 상환 부담 경감과 함께 상환율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 margin-right: 10px;"><b>목표</b></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b>미래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의 성장 지원</b></div> </div>		
정책 방향	추진 전략	추진 과제
① 효율적인 인적 자원 개발	석·박사급 고급인력 성장 지원	대학원생 ICL제도 도입
② 고등교육 기회 확대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대출 자격요건 완화 (성적 및 신용요건 폐지)
③ 교육비 부담 경감	학자금 지원 체감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 재학 중 이자면제</li> <li>■ 파산시 대출상환 면책</li> </ul>
④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관리	장기미상환자 제도 개선

## IV. 추진과제

### 과제 1 대학원생 ICL 제도 도입

- ◇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살리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
- ◇ 현행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대학원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상환방식 등을 설계

#### □ 제도 개요

-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로,

- 지원 대상을 (현행) 학부생 → (개선) 학부생 + 대학원생

#### □ 도입방안

- (지원대상) 일반대학원\*의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대학원생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의 제1항제1호의 일반대학원

- 제도도입 초기로, '22년에는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부터 적용

※ 향후 제도의 효과 및 국가재정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생 ICL 대상 확대 예정

- (지원기준) 기초·차상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 5구간 이상 대학원생은 현행처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

#### 〈'21년 학자금 지원구간 범위 및 경계값〉

구분	기초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기준중위소득 대비 (%)	별도 산정	~ 30	30~50	50~70	70~90	90~100	100~130	130~150	150~200	200~300	300 ~
소득인정액 (만원)	별도 산정	~ 146	~ 244	~ 341	~ 439	~ 488	~ 634	~ 731	~ 975	~ 1,463	1,463 ~

○ (대출연령) 만 40세 이하

※ (참고) '국내 신규 박사인력의 노동시장 이행실태 조사'(20. 9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의 평균연령 만40.3세

○ (대출규모) 등록금 대출은 학위과정(석·박사)별 등록금 소요액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되, 생활비 대출은 기존 학부생과 동일하게 지원

- (등록금 대출) 석사과정 6,000만원, 박사과정 9,000만원 한도 내 (학사과정부터 해당 과정 누적금액으로, 대출원금 기준)

※ (참고) 학위과정별 졸업 시 까지 등록금 평균 소요액(20년 대학알리미 기준)  
- 학사과정부터 누적 금액 기준으로,  
(석사) 국.공립 2,525만원, 사립 4,487만원 / (박사) 국.공립 4,469만원, 사립 7,914만원

- (생활비 대출)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출금리)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21. 1학기 기준 1.7%, 변동금리)

○ (상환방법) 졸업 이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text{의무상환액} = (\text{연간 소득금액} - \text{상환기준소득}) \times \text{기준상환율}(25\%)$$

- (상환기준소득) 매년 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21년 기준 2,280만원(공제 후 1,413만원))

- (기준상환율) 높은 졸업 연령 및 등록금 등 대학원생 특성을 고려하여 상환율 25% 적용

○ (상환의무 면제)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회수주체) 국세청이 대출자의 소득상황 등을 파악하여 원천 징수

※ (참고) 대학원생 상환율 차등 적용 관련

- 대학원생의 경우 졸업 연령이 높고, 대출금액이 학사 과정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상환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 상환면제 연령에 도달하기 前 상환 담보 및 대출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상환율 차등 적용

구분	대출연령	상환면제 연령	1인당 대출액 (20년 학기당 평균)
학부생	만 35세 이하	만 65세	248만 원
대학원생	만 40세 이하	만 65세	486만 원

- 상환율 25% 적용 시 20% 대비 등록금 대출원리금 상환시기 2년 단축

(금액단위 : 만원)

구분	학부생	대학원생			
	상환율 20%	상환율 20% 적용 시		상환율 25% 적용 시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소득 (21년 초임)	3,567	4,079	4,408	4,079	4,408
공제 후 소득	2,414	2,900	3,212	2,900	3,212
첫해 의무상환액	200 (월 16만원)	297 (월 25만원)	360 (월 30만원)	372 (월 31만원)	450 (월 37만원)
평균 상환소요 기간(추정)	8년	13년	15년	11년	13년

\* 《기본가정》

- ① '15~'19년 학력에 따른 초임(국가통계포털 KOSIS)을 기준으로 소득 추이 산출  
(금액단위 : 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출	2,924	3,045	3,115	3,282	3,338
석사	3,116	3,277	3,387	3,641	3,728
박사	3,293	3,463	3,552	3,897	3,997

- ② 상환기준소득은 연환산 기준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4개년 평균 증가율 (2.2%) 반영
- ③ 소득 통계 증가율은 학제별 4개년 평균 소득증가율(대학 3.4%, 석사 4.6%, 박사 5.0%) 반영
- ④ 등록금대출 원금 : (학사) 1,736만원\*, (석사) 6,000만원, (박사) 9,000만원  
\* '20년 ICL 1인당 등록금 학자금 대출액(평균, 학기당) 217만원 기준으로 산출

## 과제 2

## 대출 자격요건 완화

◇ 대학(원)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걱정 없이 배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성적기준 등 자격요건 완화

### □ ('21. 2학기) 특별승인제도 확대 시행

- 경제적 여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성적요건이 미달되었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제도 확대

현 행	개 선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학점 이상 2회 구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학점 이상 2회 구제 (다만, F학점의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승인)</li> </ul>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특별승인제도도 동일하게 확대 시행('21. 2학기)

### □ ('22. 1학기) 성적기준 폐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기준은 폐지하고, 이수 학점 기준 미달자에 대한 구제제도(특별승인제도) 운영

#### < '22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개선(안) >

구 분			현 행	개 선
자 격 요 건	성 적 기 준	신입생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재 학 생	직전학기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이수학점 기준 미달 학생 대상 구제제도 운영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대학생) 8구간 이내	(대학생) 8구간 이내 (대학원생) 4구간 이내
	신용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과제 3

## 취약계층 재학 중 이자면제 및 파산자 면책 허용

- ◇ 취약계층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확대 외에도, 등록금 대출 시 재학 중 이자면제를 지원하여 학자금 지원 체감도 제고
- ◇ 심각한 실업난으로 인해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 파산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취약계층의 ICL 대출 이자 지원 확대

-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는 ICL 생활비 대출\* 외에 등록금 대출까지 재학 중 이자면제 지원

\* 생활비 대출 : 현재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20년 195,409명에게 2,649억 원 무이자 지원하여 대출이자 51억 원 감경)

- (기초·차상위) **현재** 생활비 대출(연 300만원) 무이자 + **확대** 재학기간 중 등록금 대출 이자면제 (14,536명에게 약 4억 원 상환부담 추가 경감)
- (다자녀 가구) **현재** 소득구간 제한 없이 대출, 학자금 지원 4구간까지 생활비 대출(연 300만원) 무이자 + **확대** 재학기간 중 등록금 대출 무이자 및 5~10구간의 경우에도 생활비 대출 이자면제 (41,623명에게 약 38억 원 상환부담 추가 경감)
- (기초·차상위/다자녀 대학원생) **확대** 재학기간 중 생활비 및 등록금 대출 이자면제 (1,039명에게 2억 원 상환부담 경감)

#### □ 파산 시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 허용

- 제도 도입 당시부터 ICL의 공익적 성격과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파산 시 비면책채권으로 법률로 규정하였으나,

\* (미국) 학자금대출 채권은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

-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청년들의 지원을 위해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한 면책 허용

※ 제도 개선 방안 시행일(22. 1. 1.) 이전 파산면책 허가를 받았으나, 갚아야 할 대출금이 남아있는 채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 〈 '22년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 소득구간별 학자금 지원(안) 〉

현 행 (21년)

개 선 안 (22년)

### [저소득층]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국가장학금	ICL	ICL	국가장학금	ICL	ICL
520만원	금리 1.7%	300만원 무이자	700만원	재학중 이자 면제	300만원 무이자

### [다자녀 가구]

구간	등록금		생활비	<첫째, 둘째>			<셋째 이상>	
	국가장학금	ICL	ICL	국가장학금	ICL	ICL	국가장학금	ICL
기초·차상위	520만원	금리 1.7%	300만원 무이자	700만원	재학중	300만원 무이자	전액 지원	300만원 무이자
1구간	520만원	금리 1.7%		520만원	이자 면제			
2구간			450만원			금리 1.7%		
3구간	450만원	금리 1.7%		450만원	재학중 이자 면제			
4구간			450만원			금리 1.7%		
5구간	450만원	금리 1.7%		450만원	재학중 이자 면제			
6구간			450만원			금리 1.7%	450만원	재학중 이자 면제
7구간	450만원	금리 1.7%		450만원	재학중 이자 면제			
8구간			450만원			금리 1.7%	450만원	재학중 이자 면제
9구간	450만원	금리 1.7%		450만원	재학중 이자 면제			
10구간			ICL 금리 1.7%				재학중 이자 면제	재학중 이자 면제



## 과제 4

## 장기미상환자 제도 개선

- ◇ 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도모
- ◇ 학자금 대출 상환 문제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와 학자금 대출제도 건전성 제고

### □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 변경

-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청년들의 졸업 후 구직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최초 장기미상환자의 지정기간 완화**
  - \*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개월) : ('13) 3.6 → ('14) 3.6 → ('15) 4.0
- 장기미상환자 중 대출원리금 5%만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조사 중지가 가능하여, 실효성 있는 상환관리를 위해 **최소 상환기준을 조정**
- 채무자의 장기미상환자 지정이나 재산조사 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원화된 지정 기준을 단일화** (졸업/상환 기준 → 졸업 기준)

현 행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기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li> <li>• (상환기준) 상환 개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채무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기준) 졸업(학업중단 포함)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b>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인 채무자</b></li> </ul>

### □ 소득·재산조사 주기 설정

-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생애 1회만\* 실시하고 있어, 결혼·상속 등 재산변동에 따른 주기적 소득·재산조사 필요
  - \* 법률 해석 상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횟수 불명확
  - 장기미상환자 최초 지정(졸업 후 5년) 이후 10년 주기로 장기미상환자 해당여부를 점검하여 재지정\*하고, 소득·재산조사 실시
  - \* 졸업 후 경과 연수별 상환액이 일정비율(5년 10%, 15년 30%, 25년 50%)에 미달하는 경우



## V. 향후 추진계획

- 제도 개선과제 시행을 위한 예산 확보('21. 9월)
- 대학원생 ICL 제도 등 세부 실행계획 마련('21. 10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1. 12월)
- '22.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22. 1월)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개선 제도 시행('22. 1학기)